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2

다. 상 정 일 자 : 2003. 12. 12

(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 길 중

나. 제안사유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안 제4조)
-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안 제14조의2)
-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안 제14조3)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 의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감면대상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 제21조)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안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군세감면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며 아울러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명시한 조례안임.

법령상, 절차상 하자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6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3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14조의3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 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2조(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③ ----- 해당되는 경우에는 -----</p> <p>3. ----- 자동차폐차업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 해당되는 경우에는-----</p> <p>3. ----- 자동차폐차업소-----</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p> <p>-----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p>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p> <p>6~7. (생략)</p>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p>1. ~ 4. (현행과 같음)</p> <p>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7. (현행과 같음)</p>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p> <p>3. 문화재보호법 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p>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p>1.-----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부동산</p> <p>2.-----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부동산</p> <p>3.----- ----- ----- -----</p>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p>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p>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기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유기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3년간

제14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된

제14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의 100분의 50을 경감
경감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주차선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선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3. (생략).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14조의3(주차선용토지에 대한 감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3. (현행과 같음).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

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

현행	개정안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	<p>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p>

현행	개정안
<p>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은 50%를 징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p>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징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징감한다.</p> <p>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면제하고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안에서 자율결정함</p> <p>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p>	<p>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p> <p>※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안에서 자율결정.</p> <p>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